

「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관리 규정」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각종 발전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관리·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 본교의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·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·부동산·유가증권 또는 연구 업무용 물품 등 자산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일컫는다.

제3조(기금의 종류)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교육여건개선기금 : 기부자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용도로 대학에 출연한 기금<개정 2018. 1. 1.>
2. 지정기금: 기부자가 특정 대학(원), 학부, 장학금, 건축비등 사용용도를 지 정하거나,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<개정 2024. 11. 1.>
3. 현물기부금: 자산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출연한 기금

제2장 발전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

제4조(설치) 기금부서는 기금의 조성·운용·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관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5조(구성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<개정 2017. 12. 1.>

② 위원회의 인원과 구성은 총장이 정하되 학생지원처장, 총무처장, 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개정 2017. 12. 1. 2021. 3. 1.>

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발전기금 기부자, 동문, 학부모, 발전기금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는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대외홍보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10. 6. 1. 2017. 12. 1.>

제6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기금의 관리·운용계획
2.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

3.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②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기금모금 및 운용관리

제9조(기금모금) ① 발전기금 모금사업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 다만, 모금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위기관에서의 모금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모금사업 추진 계획을 사전에 기획처와 협의하여 주관할 수 있다.<개정 2012. 6. 1. 2017. 12. 1.>

② 단위기관에서 모금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관부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모금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기금사용) ①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사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일정금액 도달 시까지 사용을 유보한다.

② 특정 대학(원) 또는 학부에 기부한 기금은 소속 단위 학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전기금 집행계획서를 제출한 후, 사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11. 1.>

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기부자가 특정용도를 지정한 기금을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경우
2. 기금의 사용용도가 장학기금일 경우
3. 특별목적기금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

④ 해당부서는 기금 사용 후 기금의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공헌자 보상) 학교는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발전기금 유치 및 조성에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.<개정 2012. 6. 1.>

제12조(회계처리 및 영수증 발급) ① 조성된 기금은 본교의 교비회계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운용과 관련한 회계 절차와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 규정에 따른다.

③ 기획처장은 기금의 입금을 확인하고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12. 1.>

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

제13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) ①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
2. 본교 주요 행사에의 초청
3. 기부자의 이름 또는 아호를 새긴 기념물의 설치
4. 기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

② 제1항의 세부사항 이외의 예우를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,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예우내용

을 제안서로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- ③ 기획처는 기부の内容과 정도에 따른 예우 내용 및 기부자의 기금규모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예우방안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1. 2017. 12. 1.>

제5장 보 칙

제14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 규정) 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 대외협력위원회 규정(4-0-25)은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